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51238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0. 8.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6,016,5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E에 대한 채권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G은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248462호로 양수금을 청구하여 '16,260,067원 및 그 중 7,042,257원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G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13759호로 양수금을 청구하여 2019. 9. 25. 'E은 원고에게 16,260,067원과 그 중 7,042,257원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위 E의 부친인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3.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20. 8. 5.경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I, E, J이 있는데, 2020. 8. 5.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여 9. 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망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K 앞으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1,200만 원, 3,480만 원, 444만 원, 1,116만 원, 합계 2억 640만 원(=1억 2,00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 + 3,480만 원 + 444만 원 + 1,116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피고가 2020. 9. 15.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9. 17. 주식회사 L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21. 6. 25. 말소하고, M에게 이를 매도하여 2021. 7. 30.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6억 4,800만 원)를 마치는 한편,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재산을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E이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9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9. 2. 접수 제202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책임이 있고, 피고의 매각대금 6억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위 1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인 2억 64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E의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 98,133,333원 $[(6\text{억 } 4,800\text{만 원} - 2\text{억 } 640\text{만 원}) \times E\text{의 상속지분 } 2/9, \text{원 미만 버림}]$ 에 대해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접수 전날인 2021. 6. 2.까지 발생한 피보전채권액 26,016,583원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E의 채무초과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노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모아 매수한 것인데, 망인이 9년여 간의 투병생활을 하면서 평소 자녀들에게 본인 사망 후 혼자 생활할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주라고 하였으며,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두 딸을 포함한 자녀들은 그 유지를 받들어 상속을 포기한 것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다. 판단

E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비록 E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집행권원에 관련한 채무를 조금도 갚지 않은 점에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강서세무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E은 2018. 8. 5.부터 12. 31.까지 일용근로소득

44,592,000원, 2019년 일용근로소득 20,186,712원, 2020. 1. 1.부터 8. 5.까지 사업소득 74,450,000원, 일용근로소득 2,830,000원이 있어 원고의 채권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피고가 악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형태로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 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서 함께 살던 주거를 남은 배우자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남겨진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 내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복합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서 E를 포함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인데, 즉, E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처리하였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족했을 것이지만, 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 지분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각 확인서(을 제1, 3, 4, 5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의 노후를 걱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고, 갑작스레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유언장은 작성하지 못하였지만 자식 된 도리로써 그 뜻을 따랐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있어 딱히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E이 사실상 포기한 자신의 지분 가치는 98,133,333원인 반면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26,016,583원이고, 그 중에서도 원금은 7,042,257원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균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9.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 43115.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3115.1분의 36.556

(- 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 통기국 / 현 소유자)

